

제340회 제1차 정례회
제1차 기획경제위원회
2023. 6. 19.(월)

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268
발의일자	2023.5.31.
회부일자	2023.6.2.

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선희 의원 외 9명

2. 제안이유

- 공사채 발행 시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8조제3항 및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62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,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채 발행 시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6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. (안 제33조)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
5. 입법예고 결과: 의견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나. 부패영향평가: 부패유발요인 없음
- 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불임

7. 검토의견

□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채 발행 시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8조 제3항 및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62조제4항에 따라 행안전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,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□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3조(사채발행 및 차관)는 공사가 사채 발행시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62조제4항에 따라 ▶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▶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▶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, 행안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임.

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채 발행시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62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사채 발행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채발행의 신중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, 조문의 내용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